

전자서류의 원본성에 대한 UCP 및 eUCP의 규정·판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visions and Precedents about Original Electronic Documents in UCP and eUCP

장흥훈(Heung-hoon Jang)*

순천대학교 경영통상학부 부교수

박복재(Bok-jae Park)

여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전자서류의 원본에 대한 종합적 기준 |
| II. 전자서류의 필요성과 문제점 | VI. 결론 |
| III. UCP와 eUCP의 원본에 관한 규정 | 참고문헌 |
| IV. 최근 판례에 따른 전자서류의 원본 규정 | |

Abstract

A letter of credit is the best settlement among various means of payments until now. A letter of credit plays very important roles in rational and smooth international trade. Letter of credit is usual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But many people have to prepare a lot of transport documents in order to transact with L/C. Therefore, the transactions will be happened to delay in international trade very often. Owing to the EDI, international trade will be materialized with electronic business of E-commerce. If we transact with the electronic documents, it will be reduced the time very much in international trade.

Generally speaking, all relating parties transact with L/C complying with UCP, but there are no ruling articles about electronic documents in UCP. If all parties want to transact with electronic documents in global business, UCP has to contain the electronic provisions. So, ICC published eUCP on 2002.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original electronic papers and provisions through foreign precedents in UCP and eUCP.

If we want to exchange the electronic document, the UCP provisions about electronic documents would be revised as follows: UCP provision 20(b) would be revise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have to accept as an original documents, a documents produced or appearing to have been produced: (i)by reprographic, automated or computerized systems (ii)as carbon copies,; provided that it is marked as original and, where necessary, appears to be signed. A document may be signed by handwriting, by facsimile signature, by perforated signature by symbol, or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Key Words : EDI, Electronic Documents, UCP, eUCP

* 주저자임

I. 서 론

최근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하고 정보의 전달과 무역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상의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이 상용화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EDI에 의한 무역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와 무역업체들이 무역자동화 시스템과 인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EDI를 이용한 무역자동화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각국이 인터넷에 의한 정보와 통신의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상의 EDI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무역거래를 이행할 때 많은 서류를 발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국제무역거래의 수행을 방해하였다.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격지자간의 무역계약의 체결과 운송서류의 교환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매매당사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전자서류를 발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줄기를 원하고 있다. 제5차 화환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 UCP)에서는 이러한 전자서류의 규정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세계 각 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본과 기술의 차이로 인하여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매매당사자들의 요청으로 UCP에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최근 이러한 전자무역의 현실화에 따라서 ICC에서는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새로운 추록(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eUCP)”을 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 제정 공표하였다.¹⁾ “eUCP”는 종이신용장거래가 전자결제수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UCP도 적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²⁾, UCP의 서류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규정이 신용장 실무현장과의 차이로 인하여,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한 분야의 선행연구로서는 우선 전자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련한 논문(박복재 1997, 양의동 1997, 최석범 1997, 윤광운 1997, 전순환 1998, 조종주 1998 등) 및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의 원본과 사본(박복재, 2004),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의 삽입 필요성과 방안(장홍훈, 2001), 전자신용장통일규칙론(장홍훈, 한재필, 2002)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UCP와 eUCP에서 전자서류의 원본과 사본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고찰한다. 그리고 전자서류의 원본성에 관하여 최근 영국과 독일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UCP와 eUCP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UCP와 eUCP에서의 원본성에 대한 인정범위가 어느 수준까

1) 자세한 내용은 장홍훈, 한재필, 「전자신용장통일규칙론」, 두남출판사, 2002

2) 자세한 내용은 박복재, “무역거래 전자화에 따른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의 원본과 사본, 「해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지인가를 연구한다. 또한 전자서류를 교환할 때 UCP와 eUCP의 규정을 명시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자서류의 필요성과 문제점

오늘날 무역거래에 있어서 운송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 혁명은 기존의 재래선을 컨테이너선박으로 교체시켰고, 컨테이너선박은 물류의 신속화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점차 고속화되어 갔다. 컨테이너는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철도, 육로, 항공운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컨테이너를 활용한 국제복합운송이 발달하게 되었다. 국제복합운송은 화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게 하였고, 포장비를 절감하게 하였으며, 운송서류와 화인의 감소로 운송서류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운송비의 감소와 노동력의 부족이 해결되었고 항만하역설비를 자동화시켜 무역을 확대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복합운송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운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화물의 수취증으로서 발급되는 운송서류는 아직도 개념과 운영시스템이 국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서류가 원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의 무역에서는 소비자의 급격한 심리변화 등으로 인한 상품의 다양성과 신속성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전자서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은 국가별로 견해 차이가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무역거래를 이행할 때 외환·금융기관, 수출입통관, 물류 및 보험기관에 직접 왕래해야 했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고 많은 운송서류를 발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국제무역거래의 수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격지자간의 무역계약의 체결과 운송서류의 교환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매매당사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전자서류를 발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요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자금결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상거래에서부터 자금결제까지 종료시키는 금융EDI 시스템 개발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금융EDI는 VAN사업자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금융기관측의 결제시스템인 ACH³⁾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⁴⁾ 두 가지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금융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자자금이체(EFT)를 기업간 거래, 무역업무, 국제금융거래(SWIFT) 등과 연결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을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다.⁵⁾ 이러한 국제무역의 흐름에 있어서 전자서류는 무역거래

3) ACH(Automated Clearing House)는 전자적 정보교환에 의해 자금결제를 완료시키는 자동교환 결제시스템의 센터기구로 은행, 신용조합 등이 가입하고 있다.

4) ACH를 이용한 금융EDI라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ACH를 중개센터로 하여 금융EDI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한상공회의소, 「전자금융의 진전과 금융기관의 발전전략」, 경제연구총서 313, 1998. 8. 31, pp. 81-84.

의 신속성, 안정성,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금융관련자들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고와 방법을 도입·발전시켜야 한다.⁶⁾

III. UCP와 eUCP의 원본에 관한 규정

1. UCP에서의 원본에 관한 규정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신용장방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전자서류를 수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개정작업을 개시한 ICC의 실무작업반에서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도입으로 인하여 EDI 수용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즉,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개정할 때에도 서류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신용장 거래가 무서류거래(Documentless Transactions)의 관행을 즉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에서도 개정작업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를 전제한 화환신용장에 적용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을 서류의 송부없이 거래하는 EDI방식을 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즉, EDI방식 또는 SWIFT방식으로 신용장거래를 행할 경우 신용장 상에 전신약어로 신용장통일규칙의 준거문언을 삽입한다면 동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의 대부분 조항의 취지는 “신용장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특정한 방법으로 신용장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이 전자화에 대해 취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이 전자무역거래에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결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서류’라는 표현에 EDI 메시지와 같은 전자적인 방법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전자서류와 같은 것이 원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서류는 원본이고, 신용장 상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류의 제시는 원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⁷⁾ 사진복사(photocopy)도 신용장 상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수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원본서류의 개념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자서류를 발급했을 때 원본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사본일 뿐인가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

6) 장홍훈,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의 삽입 필요성과 방안”, 「국제상학」 제1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5, pp.221-222.

7) Dekker,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Case 223, p.66. ;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1996], 1 Lloyd's Rep. 135, 151.

칙에는 아직 전자서류의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전통적인 인쇄양식의 서류는 원본으로 취급될 수 있게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사진복사의 기술이 발달하여 전자서류 인쇄양식과 인쇄양식 사진복사의 차이점을 육안으로 간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위험을 무릎 쓰고 전자서류를 수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류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2(c)에 규정되어⁸⁾ 있고, 동등한 조항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0(b)에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다음과 같이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i.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것; ii. 복사지 사본으로 발급된 것; 단,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서류는 육필(肉筆), 팩시밀리 서명, 천공(穿孔) 서명, 스탬프, 기호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계식 또는 전자식 증명방법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⁹⁾라고 규정되어 있다.¹⁰⁾

2. eUCP에서의 원본에 관한 규정

eUCP에 나와 있는 아래의 용어는 UCP 500의 규정을 전자기록 제시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개념상의 의미를 가진다.¹¹⁾

첫째, “문면상 나타나다(appears on its face)”라는 용어는 전자기록의 자료내용(data content)의 심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문면상이라는 말은 전자신용장(eUCP Credit)거래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appears on its face”는 “문면상 나타나다”로 해석된다. 이 용어는 신용장의 조건에 제시된 서류의 조건이 일치하는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면상이란 그 내용상의 조건이 아니고 문언(wording)의 표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다. 이때에 일치성은 문면상의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문면상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상 동일한 것일지라도 수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러한 엄격일치의 원칙은 최근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 신용장조건에 문면상으로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신용장거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

8)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will accept as original documents produced or appearing to have been produced: (i) by reprographic systems; (ii) by, or as the result of, automated or computerized systems; (iii) as carbon copies, If marked as originals, always provided that, where necessary, such documents appear to have been authenticated.

9)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will also accept as an original documents, a documents produced or appearing to have been produced: (i) by reprographic, automated or computerized systems (ii) as carbon copies; provided that it is marked as original and, where necessary, appears to be signed. A document may be signed by handwriting, by facsimile signature, by perforated signature by symbol, or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10) 장흥훈, “전계논문”, pp.223-224.

11) eUCP Version 1.0 Article e3, a 참조.

아닌 타자상의 오류와 같은 사소한 것인 경우의 서류는 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서류”(document)의 개념에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도 포함된다. 서류의 개념에는 종이서류와 전자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eUCP에서는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와 관련하여 서류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규칙에서는 전자서류(electronic document) 또는 종이 없는 서류(paperless document)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전자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류의 개념 범위에 전자기록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제시장소”(place for presentation)는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소의 개념은 거리의 주소(street address)를 의미한다. 주소(address)는 우편(mail)이나 기타 통신(communication)이 수신인에게 도달될 수 있는 장소의 개념이다. 전화 및 팩시밀리가 연결되는 번호는 그것만으로 독립적 의미의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거리주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메일 주소(Internet e-mail address)는 거리의 주소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자체로 별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적 제시에 있어서 이러한 전자주소를 필요로 한다.

넷째, “서명”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을 포함한다. 서명이란 전통적인 개념에서 육필서명(signature by handwriting)을 의미한다. 종이서류에는 인증(authentication)의 목적으로 육필서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신용장거래에서 사진 복사, 자동장치 또는 컴퓨터에 의한 서류가 생성되면서 다양한 서명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육필서명 이외에도 인증기계 및 전자방식(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이 실용화되었으며 전자서명은 전자기록의 인증을 위하여 나타난 인터넷 시대의 산물이다.

다섯째, “추가”(superimposed), “부기”(notation) 또는 “스탬프”(stamped)란 전자기록에서 추가적인 성격을 지니는 자료내용을 의미한다. 운송을 증명하는 전자기록에 선적/발송을 증명하는 추가, 부기 또는 스탬프의 방식으로 표기하여 선적/발송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가 있다. 수취 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별도로 부기하여 선적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전자기록에 자료내용이 추가되더라도 별도의 서명이나 인증은 필요 없다.”¹²⁾

IV. 최근 판례에 따른 전자서류의 원본 규정

1. 영국의 판례에 따른 원본의 규정

1) 사건¹³⁾의 개요

1995년 5월 24일에 X1(Glencore International A. G.)은 알루미늄을 CIF Zhangjiagang(장지앙)으로 중국

12) eUCP Version 1.0 Article e10. Transport.(박복재, “전계논문”, pp.185-187.)

13) Glencore v. Bank of china, (1996) 1 Lloyd's Rep. 135(C.A.)

의 매수인 A(Shan He Trade Co. Lt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를 위하여 X1을 수익자로 UCP 500에 준거하여 2통의 취소불능신용장이 중국의 Y(Bank of China)에 의해서 발행되었고, 이 신용장은 런던의 X2(Bayerische Vereinsbank A. G.)로부터 X1 앞으로 통지되었다.

1995년 6월 25일에 인도네시아의 항에서 알루미늄이 선적되었고, X1이 신용장에 근거한 서류를 X2에 제시했기 때문에 X2는 동년 7월 12일에 매입(할인)을 한 후, Y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신용장조건에 따라서 동년 10월 23일에 상환을 위해 Y은행에 지시했다. 물품은 동년 7월 19일에 양륙항에 도착했다.

1995년 7월 19일에 Y는 수령한 서류에 신용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6개의 하자(discrepancy)가 있어서 X2에게 텔렉스로 서류를 거절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X1 및 X2는 Y에 의한 서류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Y는 6개의 서류상 하자를 주장했지만, 결국 다음의 3개 쟁점으로 집약되었다.

- ① 상업송장이 신용장에서 정한 western brand와는 다른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라 기재하고 있다.
- ② 포장 명세서에 물품의 명세(description of the goods)가 없다.
- ③ 수익자의 증명서는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③의 쟁점은 신용장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로서 「관계 택배업자의 수령서를 첨부하고, 선적 후 10영업일 이내에 매수인 앞으로 1조의 모든 서류의 복사본이 송부된 것을 증명하는 수익자 증명서」로 규정했던 바,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다.

1심에서는 3개의 쟁점 중에 ①과 ③에 대해서는 Y의 주장을 인정하여 X1, X2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항소원에 상소하게 되었다. 또한 매수인 A는 1995년 7월 25일 물품이 매매계약에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물품 인수를 거부하였고, 상대방 X1은 A가 수입지에서 물품의 가격저하를 이유로 물품의 인수를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원심(1심)의 쟁점 ①에 대한 판단은 찬성할 수 없지만, 쟁점 ③에 관한 판단은 인정한다. 따라서, 본 건 항소를 기각한다. 이에 따라 X1, X2의 패소가 되었다.

3) 판례에 따른 원본의 규정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례¹⁴⁾에서, Glencore International A.G.는 수익자이고, 서류는 Bayerische Vereinsbank 에 의해 매입되었으며, 개설은행인 Bank of China에 제시되었다. 서류는 Glencore 에 의해 A4 용지에 전자로 발급된 수익자의 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를 포함하였고, 최초에 발급된 서류를 사진복사 하여 사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진 복사된 사본은 일반인의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다. 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신용장통일규칙 20(b)에 규정되어 있는데 항소원(Court of

14) [1996] 1 Lloyd's Rep. 135, 151.

Appeal)에서는 그러한 서류는 원본으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 있는 증명서라고 판시하였다. 즉, 항소원의 Thomas Bingham M.R. 경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¹⁵⁾

“옥필로 서명한 서류나 타이프한 서류는 명백한 원본서류라고 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20(b)에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서류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논쟁 자체를 방해하는 것 같다. 이 부속조항은 서류가 원본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확실한 방식으로 발급된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자서류와 같이 기술적 수단으로 발급된 서류 등은 판단이 곤란하고 틀리기 쉽기 때문에 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원본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증명서의 서명은 이러한 전자서류를 단지 인증된 서류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원본으로 표시한 서류보다 더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Glencore 사례에서 항소원은 20(b) 후반부의 목적은 원본 서류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논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어떠한 기술로 발급된 서류를 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하였다. 즉, 20(b)항의 중요한 핵심은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발급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다음과 같이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즉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것, 복사기 사본으로 발급된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규정이 있지만 비록 서류를 전자서류로 제시하였다고 할 지라도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그리고 옥필서류나 타이프한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¹⁷⁾

어떤 사람들은 원본으로서의 표시의 개념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 이 Glencore 사례에서, J. Rix는 원본이라는 것은 서류를 최초로 발급된 것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서류가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유사한 표시의 동등한 서류가 필요 없다. 그러나 만약 사진 복사된 서류가 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추가하므로써 원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⁸⁾

2. 독일판례에 따른 원본의 규정

Kredietbank Antwerp v. Midland Bank 사례¹⁹⁾에서, 고등법원의 Q.C. Diamond 판사의 판시는 더욱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Kredietbank는 신용장을 매입하였고 Midland Bank에 워드 프로세서로 발급한 보험증권을 포함한 서류를 상환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Midland Bank은 서류 중에서 특히 보험증권의

15) [1996] 1 Lloyd's Rep. 153.

16) Collyer,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R 198, p.13; R 205 p.26; R 217, p.40.

17) Collyer, *op. cit.*, R 198, p.13; R 216, p.39.

18) 장흥훈, “전계논문”, pp.224-226.

19) Times, 31 October 1997.

수리를 거절하였는데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20(b)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원본으로 서명된 종지로 발급한 것이었다. 더욱이 “이 보험증권은 원본과 부분으로 발급되었으며”, 2부의 사본이 제시되었고 다른 견본은 “부분”이라고 표시한 사진복사였다고 시작하는 조항이 있었다. Q.C. Diamond 판사는 “이러한 사항이 너무 정확해서 서류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신용장상의 요구 사항이 애매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진정으로 의심이 갈 경우에는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합리적인 기간을 가져야 하고, 보험증권은 20(b)항과 일치하지만 은행이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례에서의 판시는 놀랍고 당황스럽게 하였으며, 항소원에서도 미해결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Glencore 사례에서의 판시는, 원본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환영을 받았지만 Kredietbank 사례에는 유감스럽게도 더욱 불확실성을 야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Kredietbank 사례에서 보험증권은 그 자체가 원본이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다. 특히 사진복사에서는 어떠한 기술(언급)이 없으면 그 자체가 원본서류라는 것을 보험증권에 표시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너무나 자세한 표시는 하자있는 서류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Glencore 사례와 Kredietbank 사례에서의 판시가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²⁰⁾

3. 전자서류의 원본에 따른 문제점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는 신속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EDI를 이용한 전자서류의 교환방식은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EDI에 대한 내용과 규정을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였다. 국제무역거래가 수출입업자를 위해서 신용장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용장통일규칙에 EDI에 의한 무역거래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모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작업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장통일규칙에 EDI를 수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EDI-UCP 실무위원회의 해체를 결의하였다. 이는 EDI 메시지가 안고 있는 법적인 문제와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가 서류신용장(paper credit)과 무서류신용장(paperless credit) 양쪽에 적용될 수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각 국에서는 무역거래 간소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통적인 서류를 컴퓨터에 의한 전송방식인 EDI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차 개정에서는 EDI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EDI에 관한 내용을 신용장통일규칙에 수용하는 문제는 제6차 개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서류 및 전자서명 등에 관한 내용을 약간 삽입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EDI에 의한 무역거래를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EDI에 의한 무역관행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지금

20) 장홍훈, “전계논문”, p.226.

까지 매매당사자들간에 이용되었던 “서류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신용장거래에 서류 없는 거래방식을 수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전자서류에 대한 사용 가능성만 언급하였고,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류의 개념을 종이서류에 국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전자서류에 의한 무역거래는 아직 시기 상조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례²¹⁾에서 입증되었다. 이 사례에서 비록 신용장거래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전자서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전자서류의 발급과 교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 및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은행과 매매당사자들이 EDI에 의한 전자서류를 수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서류가 원본으로서 인정을 받고, 서명감을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EDI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류도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자서류를 원본으로서 인정하여 무역거래를 이행하려면 신용장통일규칙 및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원본으로서의 전자서류의 인정내용과 범위”에 대한 규정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전자서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EDI에 의한 무역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와 무역업체들이 무역자동화 시스템과 인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EDI를 이용한 무역자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5차로 신용장이 개정될 때에도 관계당사간의 EDI에 의한 무역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서류를 기본으로 하는 신용장거래일지라도 무역거래의 신속성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상황에서 EDI에 의한 무역거래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EDI에 의한 전자서류의 발행 및 교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자서류의 인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서류의 경우 위조되거나 변조된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서류는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거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서류는 믿고 거래하는 당사자와 제3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EDI에 의한 전자메시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흔적을 남기지 않고서도 위조나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EDI에 의한 전자메시지는 아직도 법정에서 증거서류로서 인정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²²⁾ 전자문서의 경우 종이문서에 비해 서명 또는 날인이 상거래에서 아직 널리 통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종이문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에도 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서명이 전통적인 서명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21) [1996] 1 Lloyd's Rep. 135, 151.

22) 윤광운·김철호, “1980년 비엔나협약하에서 EDI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에 따른 증거문제”, 「무역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1997.6, p.290.

둘째, 전자서류를 자료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서명된 문서서류는 증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어떤 당사자가 그 서류를 증거로 제시할 경우 그 서류를 증거 자료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²³⁾ 그러므로 EDI 분야에서 증거의 기능은 각 국의 법제도 상으로 증거능력을 과연 인정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자서류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간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EDI거래에서 당사자의 책임이란 발신인, 수신인, EDI역할업무제공자의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전자 메시지에 의한 전달방법은 자칫하면 컴퓨터의 송신시간과 수령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책임문제가 명백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다. EDI의 동시적 성격 때문에 계약의 승낙은 전자 메시지가 수령되었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전자 메시지가 실제로 전송되어도 그 사이 수신인이 그 메시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그의 우편함을 열어 놓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적당한 터미널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⁴⁾ 많은 국가에서는 청약이나 승낙을 전화 또는 Telex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화자간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대부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편이나 전신에 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은 도달주의를 취하지만 승낙은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²⁵⁾

V. 전자서류의 원본에 대한 종합적 기준

1. 서류거래의 원칙과 전자서류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²⁶⁾, 이 규정은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고, 은행을 보호하며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로 개입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는 전통적으로 서류를 거래하는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신용장통일규칙을 개정하여 전자서류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은행에게는 위험과 혼란이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무역거래의 신속성이라는 시대적인 요청과 서류거래의

23) Pierre Jansinski & Eric A. Caprioli, “Legal Aspect of Letter of Credit under Electronic Interchange”, Letter of Credit Update, April 1992, p.16.

24) 우리 민법 제531조에 “우편이나 전보에 의한 승낙의 경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독일민법을 제외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도 우리 민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25) 박복재·이철, “EDI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국제상학」 제1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7.5, pp.300-301.

26)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장통일규칙 11(a)항에는 “개설은행이 인증된 전신으로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또는 신용장 조건 변경서를 통지하도록 지시한 경우, 동(同) 전신은 그 자체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서로 간주되므로 어떤 우편확인서도 송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 전기통신수단의 발달로 모든 국제거래가 점점 신속하여지고 있어 각종 전기통신수단에 의한 신용장의 개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편신용장보다 전신신용장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따라서 현재 은행간에 전신 신용장을 개설하여 관계당사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전자서류도 은행과 수출입업자간에 발급되고 교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0(b) 후반부에서도 EDI에 의한 무역거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매매당사자들간에 이용되었던 “서류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신용장거래에 서류 없는 거래방식을 수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전자서류에 대한 사용 가능성만 언급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자서류의 사용방법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류의 개념을 종이서류에 국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전자서류에 의한 무역거래는 아직 시기 상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례에서 입증되었다. 이 사례에서 비록 신용장거래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전자서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전자서류의 발급과 교환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통일규칙 및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EDI에 의한 전자서류 등을 은행과 매매당사자들이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해야 은행이 이러한 전자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과 매매당사자들이 EDI에 의한 전자서류를 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전자서류를 종전의 종이서류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은행에서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자서류를 서류의 원본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전자식 서명이 서명의 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신용장통일규칙은 EDI에 의한 전자서류 등을 수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EDI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류도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원본으로서의 전자서류의 인정내용과 범위”에 대한 규정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 13(a)에,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on their face)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문제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면상(on their face)이란 서류의 외형에 대한 언급이고 종이서류를 원본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EDI에 의한 서류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 및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²⁷⁾

2. 서명에 대한 규정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2(c)의 규정과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0(b)의 주요한 차이점은 제5차 개정에서는 서명의 개념을 최후의 문장에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류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2(c)에 규정되어 있고, 동등한 조항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0(b)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다음과 같이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i.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것; ii. 복사지 사본으로 발급된 것; 단,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서류는 육필(肉筆), 팩시밀리 서명, 천공(穿孔) 서명, 스탬프, 기호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계식 또는 전자식 증명방법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차 개정에서는 육필(handwriting), 팩시밀리 서명, 천공(穿孔) 서명, 스탬프, 기호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계식 또는 전자식 증명방법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고 확대하였다. 기호(symbol)란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하는 관인표시(官印表示, chop mark) 즉, 인장을 의미하고, 팩시밀리 서명이란 고무인으로 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공서명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류에 철인으로 압인(押印)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서명으로서 그 동안 충분히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b)항 후반부의 “그 밖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증명방법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 규정에서 종전의 종이서류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은행에서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자서명이 서명의 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고찰한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례는 서명의 개념을 더욱 강화시켰고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신용장거래는 전통적인 서류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에 전자서류에 의한 서명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제6차 개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b)항의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것을 원본으로 수리한다. 단,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서명(전자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문언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할 것이다. 즉, ‘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것을 원본으로 수리한다. 단,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반드시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는 문언은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각 관계당사자가 회피할 수 없는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를 ‘반드시’라는 용어로 바꿔야 할 것이다.

비록 신용장통일규칙 및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전자서류에 대한 사용방법과 내용이 명시되어 매매 당사자들이 전자서류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다더라도 은행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신용장거래를

27) 장흥훈, “전계논문”, pp.237-239.

방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례와 *Kredietbank Antwerp v. Midland Bank* 사례에서 판시되었는데, 만약 신용장통일규칙 및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전자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지라도 은행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서류는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 및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전자서류의 인정과 서명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전자서류에 의한 거래의 허용과 인정을 신용장통일규칙 및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명시되었다 할 지라도 은행이 지나치게 자신의 안전과 구제방안에만 신경을 쓴다면 전자서류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서류의 거래에 대하여 관계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의 한계 등을 선행조건으로 규정하여야 관계당사자로 개입하는 은행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서류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²⁸⁾

3. 원본에 대한 규정

신용장이 동일한 몇 개의 서명을 요구하고 수익자가 다른 사람의 복사지 서명(Carbon Signature)과 함께 손으로 서명한 복사지 사본을 제시한 경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ICC에서 출간된 사례연구에서는 복사지 서명의 수리에 대해 은행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복사지 서명의 수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복사지 서명된 서류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은행간의 견해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사지 서명은 20(b)항에 언급되어 있지만, 복사지 서명은 기계적·전자적 방법의 서명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20(b) 후반부에 주어진 의도는 서명 역할을 하려는 것이었고, 서명은 육필(handwriting)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복사지 서명은 육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통일규칙 20(b)항은 서명의 개념에 대하여 폭넓은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ICC에서 출간된 사례연구에 따라 “서명한 화물수취증(signed cargo receipt)”을 신용장 상에서 요구한다면 비록 사진 복사된 서류가 원본으로 표시되어 있을 지라도 서명한 화물수취증의 사진 복사된 서류는 원본으로서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²⁹⁾ 따라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EDI에 의한 전자서류는 수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전자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는 매매당사자의 계약 체결은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사용될 EDI에 의한 전자서류도 원본이라는 표시와 서명이 있어야만 원본서류로서 유통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11(a)항에는 “i. 개설은행이 인증된 전신(電信)으로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또는 신용장 조건변경서를 통지하도록 지시한 경우, 동(同) 전신은 그 자체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서로 간주되므로 어떤 우편확인서도 송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확인서를 송

28) 장흥훈, “전계논문”, pp.233-235.

29) Howard N. Bennett, “UCP 500 before the English Court”, 한국국제상학회 발표논문집, 1999, pp.70-76.

부할 경우 그것은 효력이 없으며 통지은행은 그러한 우편확인서를 전신으로 접수한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서와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³⁰⁾ ii. 전신문(電信文)이 “세부 사항 추후 통지함”(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문언)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나 우편확인서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동 전신문을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서를 통지은행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³¹⁾ 오늘날 전기통신수단의 발달로 모든 국제거래가 점점 신속하여지고 있어 각종 전기통신수단에 의한 신용장의 개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편신용장보다 전신신용장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따라서 현재 은행간에 전신 신용장을 개설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자서류도 은행과 수출입업자간에 발급되고 교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제5차 개정에서는 확인된 전신수단으로 전달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는 “세부사항 추후 통지함(full details to follow)”와 같은 표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유효한 신용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에 우편신용장을 송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편신용장을 추후에 송부된다면 통지은행은 그 내용이 전신신용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전기통신수단이 신용장의 거래에 점점 원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서류의 발급과 교환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 13(a)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on their face)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일치하는지의 문제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³²⁾ 규정되어 있어 문면상(on their face)이란 서류의 외형에 대한 언급이고 종이서류를 원본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EDI에 의한 서류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무역거래시에 EDI를 이용한 전자서류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이

30) When an Issuing Bank instructs an Advising Bank by an 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 to advise a Credit or an amendment to a Credit, the teletransmission will be deemed to be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and no mail confirmation should be sent. Should a mail confirmation nevertheless be sent, it will have no effect and the Advising Bank will have no obligation to check such mail confirmation against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received by teletransmission.

31) If the teletransmission states "full details to follow"(or words of similar effect) or states that the mail confirmation is to be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then the teletransmission will not be deemed to be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The issuing bank must forward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to such advising bank without delay.

32)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consistent with one another will be considered as not appearing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21조에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다른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신용장은 그러한 서류의 발행인과 그 문언(wording) 또는 자료내용(data content)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신용장에 그러한 명시가 없을 경우, 은행은 그 기재내용이 제시된 다른 명시된 서류와 모순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³³⁾ 이 규정에도 구체적인 서류내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료내용(data cont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EDI에 의한 자료교환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한다.³⁴⁾

신용장통일규칙 20(b)의 규정에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다음과 같이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즉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것, 복사지 사본으로 발급된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규정이 있지만 비록 서류를 전자서류로 제시하였다고 할 지라도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례에서 판시하였다. 따라서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옥필서류나 타이프 한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³⁵⁾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자서류로 거래한다면 전자서류에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례에서, 항소원의 Thomas Bingham M.R.은 “옥필로 서명한 서류나 타이프 한 서류는 명백한 원본서류라고 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20(b)에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서류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논쟁 자체를 방해하는 것 같다. ... 이러한 규정은 전자서류와 같이 기술적 수단으로 발급된 서류 등은 판단이 곤란하고 틀리기 쉽기 때문에 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원본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전자서류는 서명을 옥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J. Rix는 원본이라는 것은 서류를 최초로 발급된 것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서류가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유사한 표시의 다른 동등한 서류가 필요 없다. 그러나 만약 사진 복사된 서류가 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추가함으로써 원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전자서류도 최초로 발급한 것이라면 원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전자서류를 최초로 발급한 것을 원본으로 삼는다고 할 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복사기술이 발달하여 이 원본을 복사한 부분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에게는 이러한 J. Rix의 말을 따르기에 위험과 한계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전자서류의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규정에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33) When documents other than transport documents, insurance documents and commercial invoices are called for, the credit should stipulate by whom such documents are to be issued and their wording or data content. If the credit does not so stipulate, banks will accept such documents as presented, provided that their data content is not inconsistent with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presented.

34) 장흥훈, “전계논문”, pp.227-229.

35) Collyer, *op. cit.*, R 198, p.13; R 216, p.39.

야 20(b)항이 명백해 질 것이다. 첫째, 20(b)항에 전자서류는 원본이라는 주석을 명백히 추가함으로써 원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b)항에 전자서류가 원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원본의 발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20(b)항에 “전자서류도 원본이라는 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원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도 이러한 전자서류를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추가명시하여야 할 것이다.³⁶⁾

4. 판례에 대한 시사점과 eUCP의 보완 과제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례³⁷⁾는 당연히 ICC의 은행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문제는 동위원회가 UCP 500 제20조 (b)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항의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판결 후 상기 영국의 판례를 의식하여 신용장에 기재된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국의 Lloyds Bank로부터의 1996년 12월 13일자의 신용장통지서

「Glencore 및 Bayerische Vereinsbank V Bank of China의 판례에 있어서 런던의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모든 서류는 별도의 다른 승인이 없는 한 “원본”이라고 표시해야만 한다.」

② Bank of China의 북경에 있어서의 Head Office Banking Department가 1997년 1월 10일로 발행된 신용장의 「특별지도」란에는, 「모든 서류의 원본에는 “원본”이라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하고, 동시에 그 발행자가 육필서명을 해야 한다」

③ Bank of China의 동일 부서가 1996년 1996년 10월 22일자로 발행한 신용장의 「추가조건 4」에는, 「이 신용장에서는 서류의 사진복사물 및 복사지는 원본으로서 수리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문서가 UCP 제20조 (b)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예컨대 "원본"이라고 표시되었던 사진복사물)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다. 또한 같은 Bank of China라도 동 은행의 상해지점이 1996년 11월 28일자로 발행했던 신용장에는 상기 ②, ③의 기재가 일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³⁸⁾

eUCP 역시 내용상이나 규정상 여러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전자신용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전자신용장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범세계적인 표준화와 규범화를 통하여, 각 국이 법제도적인 면에서 통일된 거래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전자신용장의 표준화를 위한 EDI 및 기타 전자방식으로 통합된 국제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많은 서류

36) 장흥훈, “전개논문”, pp.236-237.

37) [1996] 1 Lloyd's Rep. 135, 151.

38) 박복제, “전개논문”, pp.194-195.

중 특히 선하증권과 같은 주요 운송서류에 대한 국가간의 인증 및 법적 효력 등의 동일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자신용장과 전자서류의 제시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결제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UNCITRAL이나 ICC와 같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된 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하여 규범화된 표준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UCP의 제정을 계기로 전자서류 수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⁹⁾

VI. 결 론

신용장거래는 일반적으로 ‘서류거래의 원칙’이라는 대 전제하에 무역거래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용되었던 서류거래의 원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관련 법규는 다른 국내법과 국제법과는 다르게 매매당사자와 관계당사자들의 무역과 거래관행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만약 신용장거래에서 관계당사자들이 전자서류에 의한 거래를 많이 이용한다면 신용장통일규칙의 상당한 부분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관습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각종 무역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을 개정할 때 전자통신기술에 의한 서류를 명시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이러한 전자서류의 규정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본과 기술의 차이와 상관행, 전통적인 ‘서류거래의 원칙’으로 인하여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무역관련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신용장통일규칙에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전자신용장통일규칙 추록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서류를 거래할 때 원본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신용장통일규칙에 서류거래의 원칙에 전자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용장통일규칙에는 “EDI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류 등을 은행과 관계당사자들이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해야 은행이 이러한 전자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 및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은행과 관계당사자들이 EDI에 의한 전자서류를 수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장통일규칙에 서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즉, 20(b)항의 “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것을 원본으로 수리한다. 단,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되어

39) 박복제, “전계논문”, pp.196-197.

있고, 필요한 경우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문언을 ‘복사, 자동화 및 전자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것을 원본으로 수리한다. 단,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반드시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은행과 관계당사자가 회피할 수 없는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신용장통일규칙에 원본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규정에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야 20(b)항이 명백해 질 것이다. 첫째, 20(b)항에 전자서류는 원본이라는 주석을 명백히 추가함으로써 원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b)항에 “전자서류도 원본이라는 표시를 추가함으로써 원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도 이러한 전자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련당사자들이 기존의 신용장에 따른 종이서류를 신뢰하는 것과 같이 전자서류를 신뢰할 수 있도록 eUCP의 제정을 계기로 전자서류를 수용하도록 당사자들이 협력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례 및 질의를 ICC에 문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상공회의소, 「전자금융의 진전과 금융기관의 발전전략」, 경제연구총서 313, 1998. 8.
- 박복재, “무역거래 전자화에 따른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의 원본과 사본”, 「해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4. 10.
- 박복재 외 1인, “EDI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국제상학」 제1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7.5.
- 전순환, “전자상거래의 법적 제문제점”, 「국제무역연구지」 제4권 제1호, 국제무역학회, 1998.10.
- 조종주, “전자식 선화증권으로의 이행상 법적 문제점”, 「무역상무연구지」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2.
- 최석범,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1997. 11.
- 양의동, “신용장의 EDI화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1997.10.
- 윤광운·김철호, “1980년 비엔나협약하에서 EDI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에 따른 증거문제”, 「무역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1997.6.
- 장홍훈,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의 삽입 필요성과 방안”, 국제상학 제16권 제1

- 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
- 장흥훈·한재필, 「전자신용장통일규칙론」, 두남출판사, 2002.
- 江頭憲治郎, “電子式船荷證券のための CMI規則について”, 『海法會誌』, 復刊 第34號(通卷 第63號), 勁草書房, 1990.
-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EDI制度手續簡易化特別委員會報告書 - 貿易手續における EDI 標準協定書に關する調査研究(I)」, JASTPRO刊 92-15, 1993.
- 日本情報處理開發協會, 「電子去來調査研究報告書-電子取引に係る法的問題点の検討-」, 1992.3.
-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EDI AT WORK, 1989.
- Baum, Michael S., and Henry H. Perritt, JR., *Electronic Contracting, Publishing, and EDI Law*, John Wiley & Sons, Inc., 1991.
- Belitos, B., "EDI becomes a Necessity", *Computer Decision*, October 1988.
- Benjamin, R.I., de Long, D.W., and Scott Morton, M.S., "EDI: How Much Competitive Advantage?", *Long Range Planning*, Vol. 23, No. 1, February 1990.
- Boss Amelia H., and Jeffrey B. Ritte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greements - A Guide and Sourcebook*, ICC, 1993.
- Clemons, E.K., Keen, P.G.W., and Kimbrough, S.O., "Telecommunications and Business Strategy: The Basic Design Variables", *Management Telecommunications for Strategic Advantage in Europe*, London, 1984.
- Collyer,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 R 274.
- Collyer,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R 198, p.13; R 205 p.26; R 217.
- Davis, Henry A.,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Corporate Trade Payment*, Financial Executives Research Foundation, 1988.
- Davis, L., "Retailers Go Shopping for EDI", March 1989.
- Dekker,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Case 223, p.66. ;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1996], 1 Lloyd's Rep. 135, 151.
- EDI Research, Inc., *Respondent Report for the State of U.S. EDI: 1989*, EDI Research, Inc., 1989.
- Emmelhainz, Margaret A., *EDI - A Total Management Guide*, 2nd ed., 1993.
- _____,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A Total Management Guide*, 1990.
- Gikin, M., and D. Hitchcock (ed), *EDI Handbook*, Online Publications, 1988.
- Hinge, K.C., *EDI : Form Understanding to Implemmentation*, AMA Membership Publications Divisions,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1988.
- Howard N. Bennett, "*UCP 500 before the English Court*", 한국국제상학회 발표논문집, 1999,
- Kimberley, Paul, *Electronic Data Interchange*, McGraw-Hill, Inc., 1991.

-
- Peter Jones,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 Obstacles to the Use of EDI"*, The EDI Law Review,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 Pierre Jansinski, Eric A. Caprioli, *" Legal Aspect of Letter Of Credit unde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Letter of Credit Update, April 1992.
- Robert J. Thierau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in Finance and Accounting*, QUORUM BOOKS, 1990.0
- 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Version 1.0
- Thomsen, Hans B., & Bernard S. Weble, *Trading With EDI: The Legal Issues*, IBC Financial Book, 1989.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 2001
- Walden, Ian.,(ed.), *EDI AND THE LAW*, Blenheim Online, 1989.
- Wright,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 EDI, FAX and E-Mail : Technology, Proof, and Liability*,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